

2. 이사회결의무효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피고 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에도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8435 판결)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2001. 4. 9.자 이사회에서 소외 이○종을 이사 겸 이사장으로, 소외 손○중, 최○재, 이○창을 각 이사로, 소외 임○성, 이○홍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의 2001. 4. 9.자 이사회에서 소외 이○종을 이사 겸 이사장으로, 소외 손○중, 최○재, 이○창을 각 이사로, 소외 임○성, 이○홍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중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② 학교법인의 이사직무대행자가 피대행자의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원래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사직무대행자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피대행자 자신의 후임이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분쟁의 내용이 된 권리관계 자체를 직무대행자들 스스로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초의 가처분결정에서 정하여진 임시의 지위를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처분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자가 사임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가처분의 대상인 분쟁의 권리관계는 이미 소멸하여 당해 가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형식상으로만 잔존하고 있는 가처분의 효력에 기하여 이사직무대행자가 피대행자의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이것은 원래의 가처분 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③ 불성립 또는 무효인 이사선임행위가 감독청의 취임승인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 및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한 이사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그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5.4.14. 선고 94다12371 판결)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피고의 2005. 4. 10.자 이사회에서 소외 고○현을 대표이사로, 소외 서○석, 황○선, 김○구를 각 이사로, 2006. 8. 5.자 이사회에서 소외 윤○신을 이사로, 2007. 3. 27.자 이사회에서 소외 김○형, 강○정, 윤○우, 김○원, 정○달, 전○봉, 김○순을 각 이사로, 2007. 11. 15.자 이사회에서 소외 이○숙을 이사로, 2008. 3. 9.자 이사회에서 소외 최○희를 피고의 ○○○ 원장으로 각 선임한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특수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등 임원들이 직할시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이사회의 결 자체가 부존재한 경우 위 법인의 이사였던 자들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법인인 피고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등 임원들이 그 법에 의하여 직할시장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인가의 기초가 되는 이사회결의 자체가 부존재한다면 피고법인의 이사였던 원고들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위와 같은 이사회 보존재확인소송이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9414 판결)

[참조판례] ①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임기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 또는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임기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나 감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③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위 임기 만료된 이사를 선임한 당초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는 등의 사유로 구 이사가 이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를 이사로 선임한 당초의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직무수행을 배제하고 현재의 임원을 확정하기 위하여 당초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독립법인설립, 기본재산양여, 정관변경 등)

피고법인의 20○○. ○. ○.자 임시이사회에서 ○○원을 분리하여 독립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결의, 20○○. ○. ○.자 피고법인 임시이사회에서 ○○원 독립법인 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기본재산양여에 관한 결의 및 같은 해 . .자 피고법인 이사회에서의 피고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사회결의의 효력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35084 판결)

[참조판례] 재단법인 이사를 사임하는 의사표시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재단법인의 이사이던 갑이 이사회에 즈음하여 정당한 이사인 을과 병에게 이사직 사임서를 제시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할 뜻을 밝혔으나 을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병의 철회권유를 받고 곧바로 개최된 이사회에 참여하였다가 그 회의가 끝난 후 사임서를 다시 제출하고 재단을 떠난 이상 그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표시의 표시행위는 위 이사회결의가 끝난 때까지는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28799 판결)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피고의 2009. 4. 22.자 제8차 이사회에서 소외 최○○, 한○○를 피고의 병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대학병원의 이사 아닌 단순한 대학병원 소속의 의사가 대학병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의 경우는 그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 대학병원의 이사가 아닌 단순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은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대학병원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은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②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이 대학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대학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학병원장 직무대행자 및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도 위 이사회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청주지법 1999. 10. 20. 선고 99가합2833 판결 : 항소각하)

⊗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

피고법인의 20○○. ○. ○.자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김○○를 대표이사로 소외 김○○, 권○○, 권○○ 및 원고를 각 이사로 소외 서○○, 서○○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임기만료된 이사, 감사의 선임결정무효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한 예 법인에 있어서 이어나 감사의 전원 또는 일부가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이어나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임기만료된 종전의 이어나 감사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임기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어나 감사들만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된 종전이어나 감사는 후임이어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임기만료된 위 이어나 감사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구고법 1987.2.12. 선고 86나1121 판결)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2009. 3. 22.자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의 2009. 3. 22.자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평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발언권도 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한 후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토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치거나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종료된 후 일부 이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결의의 효력 평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발언권도 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한 후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토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치고 일부 이사들에게만 찬반의사를 확인하는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사회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사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일부 이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결의는 그 결의방법에 이사회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이사회 의장이 부당하게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거나 편파적으로 진행할 경우, 이를 시정하여 적법한 결의를 하기 위한 절차

이사회 의장이 부당하게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거나 편파적으로 진행할 경우,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이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불신임결의를 발의하고 다수결로 이를 결의하여 의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한 후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로 의장이 될 자로 하여금 이사회 의장의 직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만 한다.(대구지법 포항지원 1999. 9. 17. 선고 99가합 1197 판결)